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14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서지영
김기웅 · 신동욱 · 윤영석
김기현 · 김승수 · 강승규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u>
	<u>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u>
	<u>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u>
	<u>사항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고</u>
	<u>지하지 아니한 자</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